

## 7.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改正令(案)立法豫告

農林水産部 公告 第1995-31號 1995. 4. 21

### ◇개정이유◇

1994년 12월 22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농정여건 변화에 따른 관련규정을 보완하며,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반영코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령(안)〉

가. “농어민”의 용어를 “농업인·임업인·어업인(농업인 등)”으로 바꾸고, 그 기준을 1천m<sup>2</sup>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림어업 경영을 통하여 100만원 이상의 농림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림어업에 종사(어업은 60일)하는 자로 정함.

다만, 농지개발사업지구안과 한계농지정비지구안의 1,500m<sup>2</sup> 미만 소유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는 제외함.

나. 전업농업인 등의 기준을 1개 이상의 전문경영 품목을 보유하고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이 인근 타분야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연간 200일 이상 농림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자로 함.

다. 농업사 등의 자격 중 해당 전문분야 품목 경영기간을 7년이상으로 함. 다만, 농림어업전문경영자과정 이수자 및 농림수산계 대학졸업자는 과정이수 또는 졸업후 3

년 이상, 농림수산계 대학졸업자는 졸업 후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품목을 경영하여야 함.

라. 현행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조합법인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에 거주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조합법인의 설립 및 조합원의 참여 조건 등을 완화하고 농업인이 아닌 자 중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자,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 및 유통·가공업자 등은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준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출자총액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함.

마.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를 제외한 합명·합자·유한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총액의 2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며, 농업회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영농에 필요한 기자재의 생산·공급, 육종·종묘·종균배양, 농림수산물의 매취·비축, 농기계 기타 농업용 장비의 임대·수리업,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사업으로 함.

바.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농업인 등이 회원인 사단법인을 포함함으로써 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사.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산물포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그 설치면적을 현행 3천m<sup>2</sup>에서 1만m<sup>2</sup>로 확대하며, 농업보호구역안에 농림수산물가공시설 또는 농림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사료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시설 중 5종시설은 그 설치를 허용함.

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전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을 다음 시설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면제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업단지 시설용지 : 50%면제 → 70%면제

② 농림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제조시설 : 50%면제(농어가,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전액면제)

③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 전액면제

·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포함) : 50%면제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 전액면제

자.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여 농가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무주택 농가로 한정하고, 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7천m<sup>2</sup>까지 확대함.

차. 농어촌외의 지역에 대하여 농어촌에 준하는 지원을 함에 있어 농림수산부장관은 인력육성, 기계화·시설현대화,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소득원다양화, 임업 및 산촌지원, 어업 및 어촌지원분야의 사업 중 세부사업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기타 복지·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장관이 세부사업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령(안)〉

가. 농업사 등의 신청대상자의 구비서류는 해당분야 경영기간 7년이상, 농림어업전문경영자과정 이수 또는 농림수산계 대학졸업 후 3년이상, 농림수산계 전문대학졸업 후 5년이상 해당 전문품목을 경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함.

나. 기계화영농사 선정대상을 기계화영농조사자 또는 희망자로서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젊은 인력 또는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시·도지사가 영농사증을 수여하도록 함.

다.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림어업용시설, 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의 정의를 규정함.

① 농림어업용시설 : 농·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자가소비용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가생산한 농림수산물의 보관시설,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설과 양어·양식 및 수산종묘 생산시설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② 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림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보관창고·판매장 등 농림수산물 유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림수산물을 직접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시설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부장관(참조 : 농업정책 농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마.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잘 지은 건물 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